



백산고 가정통신문

<http://school.jbedu.kr/backsan>

발신 : 백산고등학교장
수신 : 학부모님
담당부서 : 연구부
연락처 : 582-2052

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금지 학부모 연수자료

안녕하십니까?

선행학습 위주의 과도한 사교육의 폐해방지 및 학교 내 선행학습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공교육 정상화법 제8조(선행출제금지) 및 제13조(지도·감독), 제14조(시정·변경 명령)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기에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. 내용을 살펴보시고 공교육 정상화 촉진을 위한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.

○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행위란?

<선행교육>

- . 수업이나 방과 후 학교에서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행위('앞서는'교육 과정이란 해당 학기, 학년, 또는 학년 군에서 학습하도록 계획된 내용에서 벗어난 내용을 말한다.)

<선행학습 유발행위>

- .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지필평가, 수행평가, 각종 교내대회 등에 출제하는 행위
- .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
- .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

○ 학부모의 책무

공교육정상화법 제6조(학부모의 책무) 학부모는 자녀가 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수업 및 각종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, 학교의 정책에 협조하여야 한다.

○ 적용의 배제

- . 「영재교육 진흥법」에 따른 영재교육기관의 영재교육
- 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7조 제1하에 따른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
- . 국가교육과정과 시·도교육과정 및 학교교육과정상 체육·예술 교과(군), 기술가정 교과(군), 실과, 제2외국어, 한문, 교양 교과(군), 전문교과
- 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
- 뒷장의 Q&A 첨부

Q&A로 알아보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

Q: 공교육정상화법의 시행으로 학교의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을까요?

A: 그렇지 않습니다. 학교에서의 선행교육을 금지하고 선행학습 유발 요인을 억제함으로써 학습 부담을 줄이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입니다.

구 분	주체	정의
선행교육	교육관련기관	학교 교육과정에 앞서서 편성 또는 제공하는 교육 일반
선행학습	학습자	학교 교육과정에 앞서서 하는 학습

Q: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에서 선행의 기준은 무엇인가요?

A: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은 학교 교육과정에 앞서서 이루어진 교육 또는 학습을 의미합니다. 통상적으로 교수·학습 및 평가는 학기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학기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.

Q: 학생이 스스로 공부하는 선행학습도 이 법에 따라 금지되나요?

A: 그렇지 않습니다. 이 법에서 학습자가 자발적으로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선행학습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.

Q: 선행 교육 또는 선행학습에 관하여 공교육정상화법이 초·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등 교육관련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나요?

A: 네, 그렇습니다.

Q: 한 학기 내에서 담임선생님이 교과진도 운영계획보다 실제 진도를 빠르게 운영하는 것은 선행교육인가요?

A: 그렇지 않습니다. 한 학기 내에서 계획보다 빠르게 운영하는 것은 선행교육이 아닙니다.

Q: 상급학교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 전에 상급학교 교육과정에 편성된 과목을 지도하거나 과제를 부여해도 되나요?

A: 입학 예정 학생에 대한 교육은 선행교육에 해당합니다. 입학 전 신입생 적응교육(오리엔테이션)을 통해 학교 교육과정을 소개하는 경우는 선행교육이 아닙니다. 그러나, 입학이 예정된 학생에게 1학년에서 학습할 내용을 입학 전에 미리 지도하거나, 과제를 부여하는 경우는 선행교육입니다.

Q: 방과 후 학교에서 교과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나요?

A: 가능합니다. 교과 프로그램을 심화·보충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이 경우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영할 수 있으나 반드시 학생의 자율적 참여를 존중해야 하며, 정규수업을 대신한 교과서 진도 나가기 등 교육과정 정상화를 저해하는 프로그램 운영은 금합니다.

제8조(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)

- ① 학교는 국가교육과정 및 시·도 교육과정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하며,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. 방과후 학교 과정도 또한 같다.
- ② 학교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1. 지필평가, 수행평가 등 학교 시험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
 2. 각종 교내 대회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
 3.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

2022년 4월 13일

백 산 고 등 학 교 장

